화성상공회의소 공고 제2026-3호

「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」시행 공고

화성상공회의소에서는 화성, 용인, 수원 지역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,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『**2026년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**』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1월 26일

화성상공회의소

1. 사업내용

■ **사 업 명 :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**

■ **사업개요**

-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/ 만 15세~34세의 **취업애로청년**을 **정규직으로 채용**하고 /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/ **기업에게**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

■ **지원규모 : 1,200명**

■ **지원한도 : 업체별 기준피보험자수의 50%**

■ **지원내용**

- **신규채용** 취업애로청년 1인당 월 60만원 씩 **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**

※ 단, 지원대상 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,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

■ 지원대상 상세 설명

1)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**2)** 만 15세~34세의 **3)**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에게 지원

1)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

-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("기준피보험자수" 라 함)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

-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,
  지식서비스산업·문화콘텐츠산업·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, 청년 창업기업, 미래유망기업,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참여를 통해 지원 가능

※ 단,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제외
- 소비·향락업 등 업종
-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기업 등

2) 만 15세 이상, 34세 이하인 자

-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, 34세 이하인 '청년'을 대상으로 하며, 군필자의 경우 '의무복무기간'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(최고 만 39세로 한정)

3) 취업애로청년

- 다음의 취업애로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

① "연속하여 4개월"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
②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
  -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*인 청년
    *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(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자 포함)로, 수업일수 2/3 출석한 자도 포함
③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
④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한 청년
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
⑥ 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청년,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
⑦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*에서 이직 후 최초**로 취업한 청년
⑧ 북한이탈청년
⑨ 자영업 폐업 이후, 최초로 취업한 청년
⑩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

*** 기타 가능자**
- 마지막 학기 졸업 예정자, 마지막 학기 휴학중인 자 가능(25년부터 가능)

■ 근로요건

- 정규직(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)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
- 고용보험(정규직으로) 가입
- 최저임금 이상 지급
- 주 28시간 이상 근로(26년 신규요건)
- **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일 것(26년 신규요건)**

***월 급여 450만원 이하 상세 설명**

1) 채용자명단 제출 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

2) 1회차 지원금 검토 시 임금지급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6개월 지급총액이 2,700만원 이하인지 검토 후 지원여부를 확정함

[*1회차 지원금만 적용 **상여, 성과금 포함된 세전 지급 총액을 말함]

[*동일 회사 동일 임금 채용자일지라도 입사 월수에 따라 승인 여부 달라질 수 있음]**

-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("기준피보험자수" 라 함)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

-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,
  지식서비스산업·문화콘텐츠산업·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, 청년 창업기업, 미래유망기업,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참여를 통해 지원 가능

※ 단,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제외
- 소비·향락업 등 업종
-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기업 등

■ 유의사항

- 인위적감원 발생시 감원 발생 전일까지 월할 계산 후 지급, 이후 모든 참여자 지원종료 처리되므로 유의!!

- 고졸이하 학력 취업애로유형 참여자 중 채용일 기준 대학에 재학, 휴학, 중퇴(채용일 이후)일 경우, 부정수급으로 분류되어 지원금 지급액의 500% 제재금 및 처분일 기준 1년간 참여제한 등 불이익 발생

-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, 지원금을 청구 또는 지원받는 경우 도약장려금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, **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(지원받은금액의 500%)의 부가 및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음**

-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**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,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**

2. 추진 절차

■ 추진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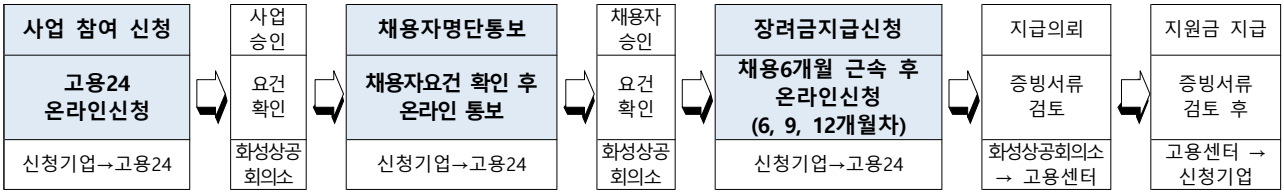

■ 단계별 주요 내용 및 제출서류

단계	주요 내용	준비사항 및 관련서류
① 사업 참여 신청 신청기업→고용24	고용24 https://www.work24.go.kr/cm/z/b/0210/openLginPage.do 로그인 후 온라인 사업 참여 신청 ※ 화성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첨부파일 참여신청 매뉴얼 참고	▪ 참여신청시 제출 서류(첨부파일 업로드 필수) **제출서류** **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** **2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(법인일 경우)** **3 2024. 2025년도 중 1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1부** - 업력 1년 미만일 경우&면세법인 - 매출액심사 제외 **4 피보험자수 5인 미만인 기업 해당기업 증빙 자료 각 1부** - ex) 미래유망기업, 청년창업기업등 ▪ 5인이상 사업장 – 우선지원대상 ▪ 5인미만 사업장 – 사업공고 첨부파일 5인미만 가능 업종 확인 ▪ 승인결과통보 – 알림톡 또는 메일 통보
② 채용자 명단제출 * 입사후 10일 이내 제출이 원칙임 * 신청기업→고용24	근로자 채용 후 온라인 제출 (사업참여신청일 기준 3개월 전 채용까지 소급 신청 가능) https://www.work24.go.kr/cm/z/b/0210/openLginPage.do 로그인 후 -> 마이페이지(26도약장려금) -> 채용자명단관리	▪ 채용자 명단 통보시 제출서류(번호순으로 하나의 pdf로 제출) **제출서류** **1 채용자명단제출서** - 채용자 변경계획서(서식5)는 채용자수 변경하는 기업만 작성 제출 **2 개인정보동의서 (청년용) 각1부** **3 근로계약서 각1부** - 정규직(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, 근로시간, 최저시급이상) - 주휴일, 급여 확인 **4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(청년용) 각1부** -국세청 홈텍스에서 근로자가 발급가능 **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1부** -대학(원) 제적일 경우, 제적증명서 추가 제출 **6 최종학력 자기확인서 (청년용)** **7 병역증명서(필요시) 각1부** **8 개인정보동의서 (사업주용) 1부** **9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활용 동의서 (사업주용) 1부** **10 사업주확인서 (채용자 명단 제출 시)** ▪ 해당서식은 참여기업 승인 시 메일 송부(유형별 양식 참조) ▪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업로드!!
③ 지원금 지급 신청 신청기업→고용24	채용자 6개월(9개월, 12개월) 근속 후 온라인 신청 https://www.work24.go.kr/cm/z/b/0210/openLginPage.do ※ 인위적감원이 있을 경우 모든 채용자 지원금 중단 유의!!	▪ 지원금 지급 신청시 제출서류 **제출서류** **1 근로계약서 각 1부** **2 급여명세서** **3 첫달 급여 산출 내역 및 산출식** **4 급여 이체 확인증** **5 도약장려금 지원금 지급 신청서** **6 사업주확인서(지원급 지급 신청시)** - 반드시 모든 항목 체크 **7 통장사본(지원금 수령 통장) 1부** - 온라인 신청시 기재한 계좌와 동일한 계좌 인지 확인 ※ 제출서류1, 2-4, 5-7 서류 각 파일하나로만 첨부 가능

3. 25년 대비 주요 변동사항

■ 25년 대비 주요 변동사항

<table>
<tr><th rowspan="2">구분</th><th colspan="2">'25년</th><th>26년</th></tr>
<tr><th>유형 1</th><th>유형 2</th><th>유형구분 없음</th></tr>
<tr><td>지원
대상</td><td>5인 이상
우선지원대상
기업

*단, 5인미만
특례기업은 가능</td><td>5인 이상 제조업
우선지원대상 기업
*5인미만 특례기업 적용X
+
해당기업에
취업한 청년

*채용자명단제출시 기업이
청년에게 지원대상임을 필수 공지</td><td>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
기업

*단, 5인미만 특례기업은
가능

*제조업 특례 없음
*비수도권 우대정책 있으나
해당지역에 직접 문의 필요</td></tr>
<tr><td>지원
요건</td><td rowspan="2">취업애로 청년
신규 채용</td><td>(기업)
청년 신규 채용

*취업애로유형 적용X

(청년)
해당기업에서 신규채용 후
18개월 이상 재직</td><td>1. 취업애로 청년
신규 채용

2.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
이하인 자
(상세설명 참고)
*제조업도 취업애로유형 적용</td></tr>
<tr><td>지원
내용</td><td>(기업)
신규채용 청년 1인당
월 최대 60만원씩
1년간 최대 720만원

*장기근속인센티브 X</td><td>(기업)
신규채용 청년 1인당
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최대
720만원

(청년)
장기근속인센티브
최대 480만원
(18개월차, 24개월차 각240만원)</td><td>(기업)
신규채용 청년 1인당
월 최대 60만원씩
1년간 최대 720만원
*장기근속 인센티브 없음
*청년지원금 없음</td></tr>
<tr><td>신청
단위</td><td colspan="2">사업단위(본사통합)가 원칙이나
사업장 단위 신청 가능

* 본사, 지사가 각각 사업자번호, 고용보험관리번호, 주소등이 분리된
경우에만 가능</td><td>(상동)</td></tr>
<tr><td>참여
방법</td><td>(기업)
기업이 고용24에서
신청

*청년 채용 전 미리
사업신청 필요</td><td>(기업)
기업이 고용24에서 신청
*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신청 필요

(청년)
18개월 근속 다음날부터
청년이 직접 고용24에서 신청</td><td>(기업)
기업이 고용24에서 신청

*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신청
필요
*청년신청 필요없음</td></tr>
</table>